

『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6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6월 28일

제1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폐지이유

- 주민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제도가 「행정절차법」 등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, 또한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유발하는 등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.

다. 주요내용

- 구미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폐지

라. 참고사항

- 「행정절차법」 제1조
- 「법률구조법」 제1조
- 법제업무운영규정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성 수

○ 본 폐지 조례안은

- 주민들의 권리 상위법령인 「행정절차법」, 「법률구조법」 과
법제업무운영규정에 구체적인 명시로 인하여 조례의 실효성이
없어 폐지하려는 조례안임

○ 검토결과

-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
실효성이 없고,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게
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